

## 공 시 송 달 신 청 서

사 건 2000가합000 손해배상(기)

원 고 ○○○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,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.

1. 피 고 ◇◇◇

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(우편번호 ㅇㅇㅇ-ㅇㅇㅇ)

2. 피고는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며, 행방불 명된 상태이고, 달리 주소·거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.

## 첨 부 서 류

1. 주민등록표등본 1통

1. 불거주확인서 1통(통장·이장)

1.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장사본 1통(통장ㆍ이장)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제○민사부 귀중

제출법원	소송계속법원			<u></u>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사소송법 제194조~제196조	
요 건	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때	제191조(외 바라도 효력이 = 당사자의	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 국에서 하는 송달방법)의 규정에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송절차 >> 송달 및 재판